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8월 11일(수)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2021년 8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8월 11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장혜림(044-200-4596) 담당: 이승우 사무관(044-200-4604)

㈜코아스의 기묘한 하도급대금 '쩠다 뺐기'

-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하여 **수수료**를 **회수(탈법행위)**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부당한 감액 대금, 미지급 대금 87백만 원 및 지연이자 27백만 원 합계 약 115백만 원

□ 공정위 조사결과, ㈜코아스는 **제조 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 체결	① →	금형 납품	→	사출물 제작	② → ③	대금 정산	④ →	대금지급

○ ① 서면 미발급, ② 부당한 페널티·반품 부과 ③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인하를 통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회수, ④ 대금 미지급

□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점에 큰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 (주)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참고> ㈜코아스 판매 의자

* 자료출처: ㈜코아스 홈페이지

〈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

○ ㈜코아스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

○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하도급대금 **15,308,843원**을 **감액**하였다.

- ㈜코아스는 아무런 **제품 이상이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이상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였음

  * 하도급법 제11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 금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음

○ 또한,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36,204,083원을 감액**하였다.

-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을 하였음

○ 이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

○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하였다.

  * 금형 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 본 사건에서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2017. 3. 13.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908,207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탈법행위 〉

ㅇ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5,830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다.

-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단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음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연 7.5%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2016. 5. 30.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1,581원을 지급**한 후, 2016. 5. 31. **제품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를 **인하**함으로써 **1,871,616원을 회수**하였음

ㅇ 이와 같은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

2 조치 내용

□ **공정위**는 (주)코아스에 ①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할 것,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③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④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59백만 원**을 부과**했다.

* 부당한 감액 대금, 미지급 대금 87백만 원 및 지연이자 27백만 원 합계 약 115백만 원

**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는데,

*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정조치로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조치임

○ 최근, 공정위는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또한, 본 사건은 공정위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운영중인 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주)코아스의 일반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OPEN

<붙임>

1. ㈜코아스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년	77,108	95,622	-3,454	-7,600
2017년	78,598	111,953	278	-929
2018년	77,054	105,463	884	-309
2019년	76,111	111,573	3,060	2,191
2020년	72,396	97,586	-1,864	-1,381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주) 시스템(https://www.kisline.com)

2.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제도

Ⅰ. 정의 및 의의

□ (정의) 하도급법 제25조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감액금지 등),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의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은 사적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임

○ 법 위반 상태를 제거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음

Ⅱ. 지급명령 부과 사례

***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한온시스템(주)이 원가 절감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결정된 납품 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45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80.5억 원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하도급사건 중 **역대 최고 지급명령 금액인 133억 원 지급명령 부과**(의결 제2020-292호, 2020. 10. 27.)

***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현대중공업(주)이 협력 업체가 납품한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약 4.5억 원 지급명령**을 부과함(의결 제2020-249호, 2020. 8. 19.)

지급명령 관련 판례 동향

□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불인정)

○ (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1호)**

○ (대법원)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려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판결)

※ 다만, 최근 손해배상 사건에서 하급심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중략)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불인정)

○ (혐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5호)**

○ (대법원) 제4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초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이전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행위의 성질상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상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